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민선6기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
-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조직 인력의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620명 → 1,627명(+7명)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
 - 1) 일반직 : 1,581명 → 1,588명(+7명)
 - 6급이하 : 1,481명 → 1,488명(+7명)
 - 2) 연구직 : 3명 → 4명(+1명)
 - 3) 지도직 : 34명 → 33명(△1명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, 제30조

○ 예산조치 : 기준인건비 내 운영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녹색정책담당관과 합의됨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민선6기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조직 인력의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동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정원의 총수를 1,620명에서 1,627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
- 6급 이하의 일반직을 1,481명에서 1,488명으로 7명을 증원, 연구직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, 지도직을 34명에서 33명으로 감원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‘15년도 기준인건비상 증원가능 인력 범위 내에서 「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(행정자치부 ‘14.12월)과 「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」(행정자치부 ‘15.4월)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